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731-6111-3 / 전송731-6715

처리부서 공보담당관실(본관2층) 담당 : 백인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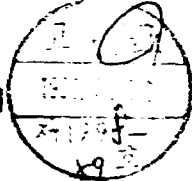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공보84000- 119

시행일자 1998. 2. 6

(경유)

수신 제 1 안

참조 내부결재



취급		시 장
보존		
공보관	전결	
공보담당관	[Handwritten initials]	사무담당관심사필
공보기획계장	[Handwritten initials]	출판관리계장 [Handwritten initials]
기안	백인호	협조

제목 월간서울('98년도 3월호)에 광고계제

서울특별시간행물에 의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월간서울 '98년도 3월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유치코자 합니다.

- 가. 광고계제 간행물명 : 월간서울 3월호
- 나. 광고계제 지면 : 표4 외 6개지면('바'항 광고료 기준 참조)
- 다. 광고공모 방법 및 일정
 - 공모방법 : 게시판, 인터넷에 공고
 - 공모일정(예정)
 - 공고 : 98. 2. 6.
 - 공모접수 : 98. 2. 12
 - 내용심의 : 98. 2. 14
- 라. 입찰일시 : 98. 2. 23(공모자가 2인이상일 경우)
- 마. 계약일시 : 97. 2. 23 .
- 바. 광고료기준

원보대조필

구분	광고료	산출근거	비고
표4	2,353,000원	52,944,000원 × 1/10 × 4/9	기획료 : 18,539,000원 인쇄비 : 34,405,000원 계 : 52,944,000원
표3	1,176,000원	52,944,000원 × 1/10 × 2/9	
표3대면	1,176,000원	52,944,000원 × 1/10 × 2/9	
내지	588,000원	52,944,000원 × 1/10 × 1/9	4개지면광고계제예정

첨부 : 공고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001

제 2 안

수신 홍보담당관

제목 인터넷 홍보의뢰

1. 서울특별시간행물예의한광고계약및해지에관한조례에 의거 월간서울 2월호에 광고를 유치하고자 별첨 광고내용을 인터넷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광고문 1부.끝.

공 보 담 당 관

공보담당관
2024.02.28

공 고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 호

공고번호: 1998-26-6	
발행처	발행일자
본	2000. 2. 6

광 고 공 모

서울특별시간행물에 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(월간서울, 98년도 3월호)에 게재할 광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1998. 2 . 6 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광고접수일 : 1998. 2 . 12 . (09:00~17:00)
- 나. 광고접수처 : 서울특별시 공보담당관실(전화:731-6111~3)
- 다. 광고접수방법 : 광고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에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제출
- 라. 간행물의 명칭 : "월간서울" 3월호('98년도)
 - (1) 발행부수 : 25,000부
 - (2) 주요내용 : 교통·환경 등 주요 시정현황, 시책에 대한 해설, 서울문화·역사·문화재 등 교양물 및 청소년교육과 관련한 사항

(3) 주요배부처 : 시·구·동민원실 및 각부서, 국회·시·구의원, 중앙부처, 언론사, 사회단체, 우체국 등 다중집합소, 각급학교, 초등학교 4학년담임교사, 시정모니터요원, 부녀회, 통반장 등 시정참여 시민

다. 광고게재지면 : 표4, 표3, 표3대면, 내지 4개지면

바. 광고료 기준 :

구분	표 4	표 3	표3대면	내 지	비고
광고료	2,353,000원	1,176,000	1,176,000	588,000	내지 4개지면 광고게재 예정

* 지면별 광고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입찰에 의거
위 금액을 초과한 최고용찰가격으로 정함

사. 광고게재 제한사항

-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, 우리시 시책에 반하는 내용, 허위·과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게재를 제한한 내용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보담당관실 (전화 : 731-6111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용어해설

- 표4 : 뒷표지의 겉면
- 표3 : 표4의 앞면
- 표3대면 : 표3의 옆면
- 내 지 : 표 1·2·3·4 및 표2대면·표3대면을 제외한 면

2019. 11. 11.
공보담당관실
공보담당관
김민준